

한경훈 / 2월+3월+5월 / 도약 GS / 2회									
수강번호	문제 1	문제 2	문제 3	문제 4	문항 총점	석차	상위%	가독성 평점	응시인원
529059	21.5	14	17	13	65.5	1	3.70%	7	27
534241	21.5	13.5	17.5	10.2	62.7	2	7.41%	6	
529165	20	12.5	16	10.7	59.2	3	11.11%	6	
534391	21.5	13.5	14.5	9.5	59	4	14.81%	5	
534251	19.7	12.5	15.5	10.5	58.2	5	18.52%	6	
534342	20.5	12.5	14	11	58	6	22.22%	6	
534423	19.9	12.5	14.5	9.5	56.4	7	25.93%	6	
529237	20.5	11	13.5	11	56	8	29.63%	5	
534222	19.5	12.5	13.5	10.5	56	8	29.63%	5	
534201	20.5	12.5	14	8.7	55.7	10	37.04%	5	
528964	20.5	11.5	12.5	9.5	54	11	40.74%	6	
534175	19	13	11	11	54	11	40.74%	5	
534355	21.5	12.5	12	8	54	11	40.74%	5	
535363	21	12	11.5	8.5	53	14	51.85%	5	
534426	19	12.5	12	9.2	52.7	15	55.56%	5	
534165	20	12.5	9.5	9.5	51.5	16	59.26%	5	
534313	19.5	11.5	11.5	8.5	51	17	62.96%	5	
534188	19.5	13	10	8.2	50.7	18	66.67%	5	
524230	19.5	12	11	8	50.5	19	70.37%	5	
529283	21	12	11	6	50	20	74.07%	5	
529277	21	13	15.5	0	49.5	21	77.78%	6	
111111	19	11.5	9	6.7	46.2	22	81.48%	5	
542916	17.5	9.5	12.5	5	44.5	23	85.19%	4	
528987	14.5	11	11.5	5.2	42.2	24	88.89%	5	
534163	20.5	5	7.5	0	33	25	92.59%	5	
534174	15	11.5	5	0	31.5	26	96.30%	4	
534397	19.5	0	11	0	30.5	27	100.00%	3	

<p style="text-align: center;">한경훈/2월/도약GS/2회/1번</p>	<p>채점자</p>
	<p>이정은</p>
<p>1. 전반적인 총평</p> <p>기술적 표장의 판단기준과 관련 판례, 조치에 관한 문제입니다. 중요논점에 해당하는 문제로 대부분 잘 써주셨습니다.</p> <p>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p> <p>(1) 설문 1</p> <p>대체적으로 잘 써주셨습니다. 다만, 문제에서 의의,취지에 대해서 논하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의의 취지를 한 목차에서 묶어서 써주는 것보다 목차를 분리해서 써주는 것이 좋겠습니다.</p> <p>(2) 설문 2</p> <p>“암시, 강조, 직감” 의 키워드 누락 없이 써주셔야 합니다. 판례 누락도 주의해주세요. 배점이 큰 경우에, 자타상품식별력과 독점적응성으로 나누어서 사안포섭 해줄 수 있다는 점 알아두고 넘어가면 좋을 듯합니다.</p> <p>(3) 설문 3</p> <p>문제에서 물어본대로 “ 타당여부 / 등록받을 수 없는 이유 / 상표등록 받을 수 있는 방법 ” 대로 목차 잡는 것이 가장 가독성 좋았습니다.</p> <p>외국의 등록례 있는 경우 판례 누락 많았습니다.</p> <p>조치에 대해서는, 분량 채우기 위해서 33조2항에 대해 의의,요건 써주기보다 최대한 다양한 조치에 대해서 써주는 것이 좋겠습니다.</p> <p>조치 잘 모르겠더라도 자신감 있게 답안 써주세요. 같은 내용의 답안을 쓰더라도 자신감이 없으면 답안에서 보여서 점수가 다르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p> <p>3. 소결</p> <p>대체적으로 다들 잘 써주셨습니다.</p> <p>판례 키워드를 활용한 상세하고 두꺼운 사안포섭, 다각적 조치를 목차로 보이도록 답안 써주면 더 완벽한 답안 될 수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한경훈/2월/도약GS/2회/2번</p>	<p>채점자</p>
	<p>이정은</p>
<p>1. 전반적인 총평</p> <p>답안 구성에서 차이가 많았던 문제입니다.</p> <p>해당 문제는 강사님 답안 구성을 숙지하거나, 강사님과 다르더라도 깔끔하게 보일 수 있는 목차 구성을 정리해두면 좋겠습니다.</p> <p>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에 관한 문제 중에서 난이도가 있는 문제에 속합니다. 문제에 따라 기재해야하는 판례를 숙지하고, “상품별” 사안포섭 누락주의 해주셔야 합니다.</p> <p>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p> <p>(1) 설문 1</p> <p>유사판단원칙과 도형 유사판단 판례 누락 많았습니다.</p> <p>33조 2항에 집중해서 유사판단 판례 누락하게 되는 점 주의해주세요!</p> <p>“” 상품별 “” 로 각각 식별력 취득되었는지, 유사한지 판단해야합니다. 배점에 따라 ‘식별력취득여부’ 를 유사판단에 넣어서 같이 사안포섭해줄 수도 있습니다.</p> <p>(2) 설문 2</p> <p>학설 미기재로 감점하지는 않았으나, 학설도 언급해주신 경우에 추가점수 드렸습니다. 판례 타겟팅 주의해주시고, 사안포섭 풍부하게해주세요!</p> <p>설문1에 비해서 답을 틀린 경우는 적었습니다.</p> <p>다만 문제에서 “” 운동화 “” 에 대해서만 물어봤기 때문에, “” 발목양말 “” 에 대해서 판단은 불요합니다. 문제 꼼꼼하게 읽어주세요.</p> <p>답안지 인상에 영향 미칩니다.</p>	

3. 소결

이 문제는 비슷한 답안들로 응용된 문제가 출제됩니다.

해당 문제의 판례를 정확하게 숙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상품별 판단”, “사용되지 아니한 상품에까지 요부전제로 판단할 수 없다”, “유사판단과 동일한 시점으로 판단한다”입니다.

답안 작성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한경훈/2월/도약GS/2회/3번</p>	<p>채점자</p>
	<p>윤영우</p>
<p>1. 전반적인 총평</p> <p>사용에 의한 식별력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중요 논점인만큼 다들 잘 작성해 주셨습니다. 판례를 잘 작성했는지, 키워드를 포함하여 사안포섭을 했는지에 따라 점수차가 갈렸습니다.</p> <p>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p> <p>(1) 설문 1 거절이유인 제33조1항 6호에 대해 간단히 작성하고 넘어간 분들이 계셨습니 다. 하지만, 설문에서 거절이유를 논하라고 했고 설문의 전체적인 배점을 고려하 였을 때 약 한 페이지 정도를 작성한 답안이 적당해 보였습니다.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여부의 경우 각 요건별 목차를 나눈 답지의 가독성이 훨씬 좋았습니다. 부분거절결정제도를 언급한 후 ‘등산화’의 등록 시기까지 언급한 경우 더 높은 점수를 드렸습니다.</p> <p>(2) 설문 2 중요 판례인만큼 대부분 판례를 잘 작성해 주셨습니다. 사안포섭을 한 번에 한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병 회사의 사용실적 참작 가능 -> 등록 가능으로 목차를 나눈 경우 가독성이 훨씬 좋았습니다. 사안포섭이 길어지는 경우 목차를 나눠보는 연습을 하는 걸 추천 드립니다.</p> <p>(3) 설문 3 소극적 효력 판례를 누락한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대신에, 침해금지청구에 대해 법조문과 함께 작성한 경우 점수를 드렸습니다.</p> <p>3. 소결</p> <p>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논점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논점이므로 이와 관련한 판례를 많이 공부해 놓으셔야 합니다. 모두들 아는 판례가 문제에 나오는 경우 대부분 정답을 맞추므로, 사안포섭과 목차에 더욱 힘써서 답안을 작성하셔야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한경훈/2월/도약GS/2회/4번</p>	<p>채점자</p>
	<p>윤영우</p>
<p>1. 전반적인 총평</p> <p>제33조1항4호와 7호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p> <p>특히 설문(1)의 경우 전원합의체 판례 문제이므로 다수 의견뿐만 아니라 별개 의견, 검토까지도 완벽히 암기해 놓으셔야 합니다.</p> <p>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p> <p>(1) 설문 1</p> <p>현저한 지리적 명칭의 취급 관련 판례의 경우 답안에 없더라도 타당한 경우 점수를 드렸습니다.</p> <p>전원합의체 판례의 다수의견, 별개의견, 검토를 모두 작성한 분들이 계셨는데, 배점을 고려할 때 다수의견과 검토만을 작성한 경우 분량 배분이 적당해 보였습니다.</p> <p>사안포섭시 ‘서울대학교’를 ‘서울’과 ‘대학교’로 나누어 식별력을 판단한 후에 새로운 식별력이 형성되었는지를 검토한 답안에 더 높은 점수를 드렸습니다.</p> <p>(2) 설문 2</p> <p>입증책임에 누락한 분이 많이 계셨습니다.</p> <p>의견서 작성 문제의 경우 심사관의 입증책임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짚고 넘어가셨으면 합니다.</p> <p>3. 소결</p> <p>까다롭지 않은 설문이었기에 대부분 답안을 잘 작성해 주셨습니다.</p> <p>그러나 문제에 나온 사실관계를 답안 작성시 포섭하지 않는 분이 종종 계셨습니다.</p> <p>사안 포섭은 풍부할수록 좋으므로 시간 문제가 없다면 최대한 문제에 나오는 사실관계를 적극 활용하여 답안을 작성하셔야 합니다.</p>	

〈문-1〉

I. 서문 (1)

1. 법 33조 1항 3호 의미

상품의 산지·품질·형상·기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포장만으로 된 상품은 등록받을 수 없다.

2. 불규칙 표시

이러한 기술적 포장의 경우 상품의 일반적 의미를 짐작시키는 포장으로서 대부분 식별력이 있으며, 실사 식별력이 있다하더라도 거래시장에서 누구에게나 사용될 수 있어야 하는 포장으로 등록가능성이 없으므로 그러한 포장의 등록을 금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3. 판단기준 체계

(1) 구체적 기준

1) 원칙

일반 수요자 및 당해 상품 거래자의 일반적 인식은 기준으로 판단한다.

2) 예외

의약품의 경우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검제로 판매되는 점, 광고가 금지된 점, 일반의약품의 경우 한자가 동양을 상징하여 약사가 약을 고르고 복용지도의무가 있으므로 의약품의 경우에는 의사.

약사 등 전문가가 포함된 집단은 기준으로 판단한다.

(2) 시기적 기준

기술적 표준에 해당하든지 여부는 등록 여부 결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3) 판단기준 취사체

표준이 기술적 표준에 해당하든지 여부 판단 시에는 해당 표준의 관념, 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4) 결합상품의 경우 취사체

특이성 구성이 결합될 결합상품의 경우 결합될 지 체로써 판단해야 한다.

II. 선행 (2)

4.5

1. 기술적 의미 직감 없는 경우 취사체

어느 표준이 그 상품과 관련하여 그 의미를 암시하거나 강경하다 하더라도 표준 자체적으로 보아 일반 소비자 인식을 바탕으로 기술적 의미를 직감할 수 있는 경우 기술적 표준으로 볼 수 있다.

2. 사안의 경우

(1) 해당 표준 관념

"알바채권"은 "알바"와 "채권"의 결합으로서 "알바"는 본래 직감이 아닌 별도 수입 얻기 위해 단기. 임시로 고용

되어 일하는 것을 의미하고, '직업'은 '하느님이나 신분이 있다는 이상 세계'를 의미한다. 두 단어가 합쳐져 '알바하기에 좋은 서비스 제공장소'의 의미로 인식될 수 있으나 이러한 관념은 형이상학적인 개념에 해당한다.

(2) 상품과의 관계

직업서비스인 직업소개업과 관련하여 생각해보면 "알바하기에 좋은 서비스 제공장소" 내지 "특히 알바를 구할 수 있는 곳"으로 강조·명시할 수 있으나 직감된다고 보기 어렵다.

(3) 거래신장

"알바직장"이라는 단어가 거래계에서 모두에게 필요성을 사용되어야 한다는 공익성 특질적응성이 결여된다는 거래신장도 보이지 않는다.

(4) 질권

위 내용들은 모두 종합적·개괄적으로 고려해볼 때 甲 출원 등록가능하다.

II. 설명 (3) ① **직업**

1. 2 주장 타당성 - 각

(1) 타당 등록제 관련 쉐어제

숙지주의 원칙에 따라 타당에서 다수등록된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의 거래신장, 수요자 인식 등을 고려



하여 다른 등록례에 귀해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2) 사안

미국에서 "COUNTRY"가 포함된 상표가 다 등록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미국의 등록례가 국내 상표 등록 여부에 영향을 끼칠 수 없으므로 미국의 등록을 주장하는 그의 주장 부당하다.

2. 상표 등록 가법 - 소견

(1) 관념

'안경나라'는 '안경'과 '나라'가 결합된 결합상표로서 상표 지체로서 그 관념을 파악해보면 '시력을 교정하는 수단으로서 사용되는 안경의 세계'라는 의미이다. '나라'는 국가 내지 특수한 사물의 세계를 뜻하는 해야하하하하 개념으로서 일반 수요자가 그 의미를 직감할 수 있다.

(2) 상품과의 관계

재정 서비스인 안경판매대행업 등과의 관계는 살펴보면, 다양한 종류의 안경이 판매되어 있는 안경판매업의 의미로서 일반 수요자가 그 의미를 직감할 것으로 보인다.

(3) 거래실태

다양한 상품 종류가 많은 판매장의 경우 종종 그물

	전과 나라는 합쳐 사용하기도 하므로 공익상 인경나라 은 2개에 특장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4) 결론	위 사안들 종합해보면 2 출원 등록 불가하다.
3. 등록위반 2 가지	
(1) 현재 출원을 통해	
1) 다른 구성 부가-삭	식별력 있는 형태 등 다른 구성을 부가하면 등록가 능하나 이는 모의변형으로 보장이 불허된 것으로 본다.
2) 법 33조 2항 2호	2020년정부터 사용하여 등록여부결정시 2개 지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은 주장하여 등록가능 하다.
(2) 새로운 출원을 통해	2은 자신의 상표에 다른 식별력 있는 형태 등을 결합하여 33조 1항 3호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 여 새로운 출원으로 등록가능하다.
IV. 실문 (4)	
1. 도안화한 경우 제외	가상적 판상은 도안화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특별하

주의를 끌게 되어 더이상 문자의 기술적 의미를 직감할 수 없는 정도로 문자인식력을 압도하여 드는 안해된 경우 法33제1항3호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사안

兩 제품의 'Original' 부분과 'Classics' 부분은 지칭상품인 내려받기 가능한 음악파일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식별력 있는 기술적 표상은 변형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할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Jazz' 부분도 기술적 표상임을 해명하나 이 영의대머리를 필기체를 표기함어 있어 첫글자는 언뜻 숫자 7로 보이거나 아래 획과 결합하여 알파벳 2나 숫자 2로 보이고 마지막 글자는 숫자 3으로 보일 정도로 변형되어 있다. 이는 더이상 문자의 기술적 의미를 직감하기 힘든 정도로 문자인식력을 압도하여 드는 안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술적 ~~상표~~ 표상은 변형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할 표상으로 볼 수 있다.

3. 결론

法33제1항3호 해당 없고 다른 제정인유 보이지 않아 등록가능하다.

(중)

〈문-2〉

I. 실문 (1) 7

1. 상표 유사 판단 일반 원칙 취지 취지

양 상표 유사 판단 시 양 상표의 관.형.과념은 각각 관.개념.이념으로 관찰하여 지칭상품 거래계의 일반 수요자의 직관적 인식을 바탕으로 참치 인.활동 영려 있는지 판단한다.

2. 등록 여부 결정 시 식별력 취득 취지 취지

상표의 등록 여부 결정 시 근래 지에 사용 등이 의 해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 사용 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대한 상표 유사 판단 시 이는 지로 유사 판단할 수 있으나, 사용 상품과 동일하지 않은 상품이 대해서까지 그 영려가 당연히 미친다고 할 수 없다.

3. 식별력 취득 상품 혼동

사안의 경우 甲은 등록 여부 결정 시 지 상표X가 혼동하에 관하여 甲 상품 참치로 지 식별될 수 있게 되었으므로 그와 동일한 상품인 혼동하에 대해서는 식별력 취득 지로 유사 판단 가능하나, 사리형념상 동일하지 않은 발목상 말에 대해서는 그런 수 없다.

4. 상표 유사 판단

(1) 동형 상표 배제

동형 상표 유사 판단시 의관이 주는 지배적 인상이 유사한 경우 양 상표 유사하다.

(2) 등등화 부차 상표 - 유사

甲이 등록여부 결정시 권 출원판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되어 이를 중심으로 양 상표 대비해보면 Y 상표는 X에 부가적 동형 결합 형태로써 X에 의관 지배적 인상 유사하므로 서로 유사하다.

(3) 반목양만 부차 상표 - 비유사

甲 식별력 취득효과가 미치지 않으므로 양 상표 권 체로써 비교해보면 Y에는 X에 존재하지 않는 부가적 동형이 결합되어 그 의관에 차이가 있으므로 양 상표의 의관 지배적 인상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서로 비유사하다.

II. 심문 (2) ①

1. 문제점

등록여부결정시 이후 상표가 식별력 취득한 경우 양 상표 유사판단시 이를 고려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해법

① 수요자 인식 및 출원행동 방지를 위해 오히려 보

아 유사판별해야 한다는 맥락, ③ 사용한 상품과 동일한 상품이든 모범을 볼 수 있다는 제하의 맥락, ④ 등록의견을 관철하여 무효사유 있는 등록으로 볼 수 있다는 해의 맥락 있다.

3. 취사취세

상품의 식별력을 상대적·유동적인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에 따라 그 정도 및 유무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식별력 취득 여부는 상품 유사 판단 시점에 따라서 그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등록 이후 상품이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라 한 지라도 사용된 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대해 시는 식별력 취득을 기준으로 하여 상품 유사 판단할 수 있다.

4. 경합

상품의 식별력을 상대적·유동적인 개념으로 판단 시점에 따라 그 범위 및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요자 인식 및 혼란방지 방지를 위해, 상표법 목적을 고려해볼 때 취사취세 타당하다.

5. 사안

甲이 등록여부결정시 이후에 X에 대한 식별력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현재 수요자는 X를 보고 甲의 혼란으로 인식한 것이므로 甲 식별력 취득 상품

과 동일한 상품인 Z이 사용한 운동화에 부착된
 상표 Y는 그 라벨의 지배적 인상이 서로 유사
 하다. 따라서 Y에 ~~부착~~ X외에 부가적 도형이
 결합될 형태라 하더라도 지배적 인상 즉 라벨
 이 유사하므로 양 상품 유사하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 CF <원>

<문-37>

I. 설문 (1)

8.5

1. 예상 개시이유

(1) ~~법 33조 1항 6호~~ 의의 취지

발달하고 흔히 있는 표상만을 된 상표는 자라상품식
 발라 및 특장점등이 있으므로 등록불가하다.

(2) 판단기준 제시

~~법 33조 1항 6호~~ 해당 여부는 거래실태, 공익상 특장점에
 기 독점권 부여하는 것이 정당인지 여부 등 고려하여
 판단한다.

(3) 심사기준 예시

2자리 이하의 숫자, 2자리 이하 알파벳이 단순
 결합될 경우 불허 해당한다.

(4) 상안

甲 상표 K2는 알라벳 K타 숫자2의 단순 결합으로
 시 甲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부당하므로 法33조2항
 6호 개시이유 예시된다

2. 등록가능성 - 징구 (등산화)

(1) 法33조2항 의의. 취지

등록주의 본질적요건으로서 상호 요건 하에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를 예외적으로 등록시켜주는 제도이다.

(2) 출원 전부터 사용 - 징구

甲은 출원 전인 2014년부터 K2를 등산화. 등산
 복에 사용해왔으므로 불요건 충족된다.

(3) 특정한 출처표시로 식별 - 징구 (등산화)

1) 창작 가능 상표 취지

출원 상표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상품의 장기간, 독점
 적 사용은 위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여부
 판단시 창작할 수 있다.

2) 특정한 출처표시 식별 판단기준 취지

특정한 출처표시 식별력있는지 판단시, 사용기간, 사용
 횟수, 계속 사용 여부, 판매실적, 점유율, 광고 횟수 및
 내용, 품질, 명성, 사용 경위 등 종합적 고려하여
 판단한다.

3) 시한

甲은 2014년부터 2024년까지 K2 및 동일성

인정되는 상표들이 사용될 등산하 판매하여 500
 00의 수익은 냈고, 장기간 광고를 한 점 등 종합적
 고려해볼때 **등산하**에 대해 식별력 취득 인정
 된다.

(4) 사용 상표-상품 종류-시장

甲은 자신 사용 상표 중 하나인 K2를 사용상품인
 등산하 등산복에 출원한 바 볼 물건 충족된다.

(5) 영조해제 제13조

법33조 2항은 볼래 식별력 인정될 수 없는 상
 품에 예외적으로 등록을 시켜주는 규정으로서
 그 대상 및 기준을 엄격히 해석 적용해야 한다.

(6) 결론

甲 상표는 볼래 33조 2항 6호로 등록 불가했으나
불가정정제 제13조에 따라 **등산하**에 대해서는
 등록 불가하나 **등산하**에 대해서는 등록 가능하다

II. 심문 (2) 3.5

1. 제3자 사용 창작 제13조

원칙적으로 33조 2항 6호로 출원인의 사용시점만
 고려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경우에 따라 전에
 실제 사용한 자로부터 상표에 관한 권리를 양수할
 수도 있는 바 이러한 경우에는 그 제3자의 사용

실질도 ~~판정~~ 창작하여 판단할 수 있다.

2. 등록 가능성 - 청구

(1) 兩 실질 창작 가법-청구

甲은 兩 회사 자본 적분 보유하고 가족과 兩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으므로 앞 취소에 의심 사소한 바다 같이 실제 사용자로부터 상품에 관한 권리를 양수받은 수도 있으므로 兩 사용 실질 창작할 수 있다.

(2)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여부-청구

앞서 살펴본 바 K2 상품은 3321항6호에 해당 하나 丙이 K2를 등산복에 5년 이상 타인과 비경합적으로 계속 사용한 점을 창작하면 충분 치 사용으로 특징인 출처를 식별되었고 사용상품은 사용상품에 출처하였으므로 甲의 등산복에 대한 출생상품까지 모두 식별력 취득했다.

(3) 결론

등산복, 등산복 모두에 대해 등록 가능하다.

II. 식원 (3) 5.0

1. 등록 전 식별력 취득한 경우 취례

보래 3321항 3호 내지 7호에 해당하여 등록받을 수 없는 상품을 3321항을 통해 등록받은 경우에

은 다른 상표 등록과 마찬가지로 동일 범위 내 특정
 권, 동일, 유사 범위 내 사용금지권 미치므로 유사
 범위 내 사용하든 제3자에게 사용 금지 등 청구할
 수 있다.

2. 특 상표 유사 판단 - 기준

(1) 모의 관찰 의미, 필요성 취재

상표 유사 판단 시 시의 관찰 원칙이나 일반 수요자
 에게 어느 부분이 강한 인상을 주거나 기억·연상
 하게 하여 독립하여 출현가능성 수행하는 부
 분, 즉 모가 있는 경우 정한 시의 관찰 경
 를 유추를 위해 모의 관찰 할 수 있다.

(2) 모의 정의 시의 기준 취재

한 상표에서 모를 결정할 때에는 상표의 주시권
 명성, 강한 인상 주는지 여부, 비중, 상대적 식별력
 차이, 결합관계, 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적 등 종합적
 고려하여 판단한다.

(3) 사의

1) 2 상표 모 - K2

K2가 사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 추적으로 인해
사의 장기간 광고, 500억 수익 등등 고려해볼
 때 주지한 상판되고, 지상상품 등산하
 다 관련하여 BOOTS 부분은 상대적으로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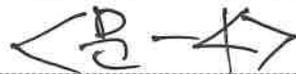
별표이 약한 점, K2와 BOOTS가 트레이스기르 결
합되어 있는 점 등 종합적 고려하면 2 상표 구
분 K2이다.

2) 결를

⊕ 상표 K2와 2 상표 구 K2 비교해보
면 시리 의관, 출침, 관념이 모두 동일 내
지 유사하므로 양상표 유사하다.

3. 결를

2 구상 구분하다.



I. 실문 (1) 7.0

1. 제3321항 구분 의의 취지

현재하는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
표는 특성명칭, 지라상표 구분 의의 취지 등을 구분
한다.

2. 현재하는 지리적 명칭 의의 취지

현재하는 지리적 명칭이란 통의 관체가 일반 소비자
에 즉각적으로 지리적 의미는 짐작시키는 것을 말한다.

3. 현재하는 지리적 명칭 구분

(1) 등록불가

특3322항4호의 개량요인이 있으므로 등록받을 수 없다

(2) 3322항 가능

현시한 지리적 명칭의 경우에도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시 등록가능하다.

(3) 다른 개성 결합 배제

현시한 지리적 명칭이 다른 식별력 요소 부분이 결합되어도 볼 수 없다.

4. 특3322항 등록 가능-정규

(1) 결합으로 새로운 식별력 취득시 배제

특3322항4호의 현시한 지리적 명칭 등이 다른 개성 결합으로 새로운 식별력 형성되는 경우 볼 수 없다.

(2) 식별력 취득 판단방법 배제

결합으로 인해 새로운 식별력 취득한 경우는 다중 다양하므로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3) 대항인 결합 배제

현시한 지리적 명칭이 대항인 결합한 경우 그 결합으로 인해 결어 일반적으로 의미가 지탄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식별력 취득한 경우 특3322항4호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사안

甲의 '서울대학교'는 서울과 대학교의 결합으로
 서울대학교는 68년간 명칭을 계속 사용하여
 28만명 이상 졸업생 배출, 16개 연세대학 등
 설립·운영 증명서, 가사가 수반권이 달하고 사면
 이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재 국립종합대학교로 기
 재된 점 종합하면 일반적으로 서울시
이 일컫는 대학이 아닌 특정 대학으로서
새로운 식별력이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33조항하의 해당 법규 다른 기재
 이유 보이지 않아 등록가능하다. **GOOD**

II. 설문 (2) **6.0**

1. 法33조항하의 의의. 취지

보통의 규제로서 자타상품식별력 또는 독립적응성
 없는 상품을 모두 내열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규정된 것문이다.

2. 판단기준 제시

33조항하의 해당 여부는 상품의 관능, 상품과의
 관계, 거래실태 등 종합적.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자타상품식별력이나 ~~특정~~ 누군가 특정하는 것이
 공익상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3. 문장상표의 경우 사례

문장상표라는 사실만으로 3321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그 문장이 거래계에서 흔히 사용되는 광고문안이나 구호로 사용될다는 등의 특별한 사실이 없으면 3321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사안

2 상품 'engineering your competitive edge'는 '너의 경쟁력을 높여준다'는 등의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고 이는 자정서비스 및 자정상품과 관련하여 edge, engineering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단순 기술적 표상의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자정상품, 서비스 관련 거래실적을 고려해볼 때 수요자에게 흔히 사용되는 광고문안이나 구호로 사용되고 있다는 실정도 없다. 따라서 2 상품을 식별력이 없다고 인정할 수 있고 2에게 독립시키는 것이 공익상 부당하다고 볼 근거도 없다. 따라서 증거 등으로 명확히 3321항에 해당하는 사실 입증할 수 없는 한 등록결정해야한다는 취지로 의견서 제출한다. **GOOD.**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잘 보았습니다 :)

[문제-1] (상동법은 아하, 초, 아라 한다.)

I. 실문 (1)

6

1. 기술적 특징의 등록 불허 규정 조. 33조 항 3호

지정상품의 산과 용리, 권태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술 방법은 본래의 사용방법을 본래의 방법으로 본래의 방법으로 된 것은 등록 불허한다.

2. 조. 33조 항 3호의 취지가 신성한 권리

신성한 권리 등록은 각각의 기술적 특징의 경우 식별력이 없이 기타 상품 식별능력이 떨어지지 아니, 신성한 권리 식별기능을 한다는 하더라도 거래계에서 누구의 사용에 해야 하는 동시에 특정인에게 독점권이 부여하기 때문이다.

3. 주체적 기원 취지

해당 지정상품의 수가가 노는 객관적 인식을 기원으로 기술적 특징의 여부를 판단한다.

4. 사적 기원 취지

조. 33조 항 3호의 기원 취지인 판단하는 사적 기원은 신성한 등록의 등록의 기원이다.

5. 기술적 특징의 판단 기준 취지

가속적 증상에 해당하지는 해당 증상이 가려진 관성, 자력성증상의 관계, 거시적 증상을 종합하여 각각의 증상을 판단해야 한다.

6. 종합증상의 경우 상세

여러 증상의 증상은 구별된 종합증상은 구성 관계를 들이 가속적 증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7. 결론

가속적 증상은 자력성증상 및 특이증상이 결여된 증상을 불리하나, 일반증상이 자력성증상의 관계에서 증상을 보지 않는 증상은 각각의 증상을 각각으로 판단해야 한다.

II. 식별 (2)

4.4

1. 상층의 상층을 양상하는 데 그치는 양상(상세)

특이증상과 자력성증상의 상층을 양상-강제하는 데에 그칠 뿐 해당 증상의 수치가 상층의 상층을 각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속적 증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甲 특이 증상의 특이 증상 (각각)

(1) 특이증상의 관성



"안바퀵"은 '안바'와 '퀵'으로 결합된 형태이므로, 결합을 통해 두어자를 해당 영문으로 보고 '아르바이트를 하기 좋은 곳' 역시 '아르바이트를 하기 좋은 곳' 정도로 관용화할 수는 있다.

(2) 지칭성용어의 관례

그러나 지칭성용어인 '직접서비스'라 관용화하여 볼 때, 비록 '퀵'으로 인해 장의의 의미는 암시한다는 하더라도 이는 형이상학적 개념으로서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영문을 떠올리게 하기 어렵다.

(3) 거래성용어

또한 서비스 분야에서 '퀵'이 '좋은 서비스 제공'이라는 파생적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나, 이는 '안바'가 특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간접 서비스' 정도로 암시하는 정도를 넘어선 직감되기 어렵다.

(4) 종합적 판단

위와 같은 사실들을 볼 때, "안바퀵"은 서비스의 성질을 암시·강조하는 데 그럴 뿐 직감하게 할만한 분이 여러의 기준에 충족하지 않는 바, 위의 영문출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한 등록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III. 식별 (3)

1. 그 특징의 양부 (3)

(1) 외국의 등록제 식별력 인정 여부 체계

우리 상표법에 의해 등록 가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니, 인지와 관행이 다른 외국의 등록제 및 법제 여하로 등록 가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2) 사안

따라서 타국이 'COUNTRY'가 포함된 상표가 등록하여
 된 사람이 원의 "안경나라"로 식별력이 있다는 그의
 주장은 부정하다.

2. 그 특징이 등록받을 수 없는 이유

① 그 상표인 "안경나라" 중 '안경'은 지명서비스인 안경 판매서비스 등에서 특정하는 상품 자체로서 식별력이 없으며, '나라'와 결합한 것은 하위상도 '나라'는 국가 내 특정한 사람의 세계로서 그 관행에 의해 형성된 관행은 '안경이 많은 곳', '안경은 판매하는 곳' 등으로, ② 이는 수차례 하여금 지명서비스의 심의를 양화·강조를 넘어 직감에 한한 할 것이어서 가늠적 관행에 해당하되, ③ 표준으로 함 조 위반으로 등록 불가하다.

3. 그 이 상표를 받을 수 있는 방법

(1) 본질적 식별적 취득

① 무차별적으로 무차별성을 압입한 것으로 도안화되어
 도형과 같이 인식함으로써 가동성 상의 라이선스
 사기치 않도록 하는 경우 가동한다, ② "안정관리"를
 그와 같이 도안화하여 본질적 식별적 취득에
 복되 있다, ③ 이와 같이 도안화하는 경우 권리
 범위에 해당할 여부가 있다.

(2) 사용에 의한 식별적 취득

① "도안"으로 상권 관리에 의해 해당되는 권리이므로
 사용에 의한 식별적 취득이 이루어지므로 (도안)으로
 관리, ② 그와 같은 권리 "안정관리"를 권리자에게
 사용에 식별적 취득을 위한 경우. 양측의 경우
 할 것이다.

(3) 출원 취하 후 재출원

현재 출원은 취하한 후 상권을 도안화하여 지출
 원회복 되 있다. **원회복**

IV 실용 (A) **IV**

1. 무차별성의 도안화 취하제

실용 가동성 상의 해당되는 상권 관리 하더라도 그
 무차별성을 도안화하여 본질의 취하제를 가진 일반

수어자에게 특별한 주의를 주어 본래 평범이 직감에
하는 상투의 생각. 즉 가늠할 내용을 인식할 수 없
을 정도로 무의의의미를 강조하는 경우에는 더이상
가늠할 평범이 제정하지 않는다.

2. ㄱ의 음가능성 검토

① ㄱ의 상투는 'Jazz' 라는 영어단어를 도입한 것
이므로, ② 그 무관 자체만 본다면 자립성인 '내
발리 가능한 음악 지인' 과의 관계에서 상투의 심정을
직감시키나, ③ 도입된 형태를 볼 때 'Jazz' 를
권기체를 표현함에 있어 첫 글자는 숫자 '1'로 보이
거나 아래의 선과 결합하여 일화법 '2'로 보이기도
하고, 숫자 '2'나 마지막 글자 역시 '3'으로 보일 등
수어자가 도저히 영어 권기체의 원형을 인식할 수 없
을 정도로 변형된다. ④ 이러한 도입의 수능은 물론
이제까지 강조하고 특별한 주의를 주어 가늠할 평범이
제정 않는다.

3. 상투의 제정

따라서 ㄱ 표현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한 음가
하리. [문]

평안 행복까지 2:5
부담 화사 😊

[문제-2]

I. 실문 (1)

7

1. 유사한 일반인적 취제

래비라는 양 상품의 외관·형상·색상은 각각 이격적·권해적으로 인정하여 일반 수요자가 상습적 태부에 대해 느끼는 직관적 인상을 기준으로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 염려가 있기에 마수 판단한다.

2. 혼합상품의 유사한 취제

① 혼합상품의 경우 외관이 주는 지배적 인상이 동일·유사하여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 염려가 있는지는 중심으로 살펴야 하며. ② 특히 이격적 인상이 중요하다.

3. X와 Y의 유사여부 판단

(1) 사용에 관한 특별적 취제의 범위 취제

~~취제 범위에 관한~~ 취제 범위에 관한 상품 출현 권위력 사용상 전라 사용에 관한 특별적 취제를 취할 정무라 하더라도, 특별적 취제는 실제 사용된 상품에 한하여 이와 유사한 상품까지 특별적 취제가 인정될 것이 아니다.

(2) 사안

1) '음료수'에 대한 X와 Y의 유사여부(각각)

X는 '음료수'에 대해 사용에 관한 특별적 취제를 취

7!



한바. Y가 X에 부가적인 통행이 전방진 형태로서 그
이전의 추는 제각각 인상은 X의 식별력을 고려하면
X의 생명이 유사한 것이기에, Y는 응원에 대
해 X와 유사하다.

2) '반복양말'에 대한 X와 Y의 유사 여부 (5점)

'반복양말'은 '응원'에 유사한 생명이 사권통념상
종인하지 않아 X가 '반복양말'에 대해 식별력을
취득했는지 불확하다. 이 경우 X와 Y간의 차이
오인·혼동 염려가 없으므로 Y는 '반복양말'에 대해
X와 바우사하다.

(3) 결론

X와 Y는 응원에 대해 유사하다. '반복양말'에 대
해서는 바우사하다.

II. 심판 (2) 6.4

1. 문제점

특허청의 결정에 대해 상위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 이를 고려해 유사한지 가능한지 문제된다.

2. 핵심

① 상위에 따른 식별력 취득을 두어 본문의 판단이 있어

이후로 되어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임. ② 통용어를
아위로 이후로 볼 수 있다는 비의의성이 있다.

3. 세계

유사판권에 있어 주어진 권과 같은 식별적 유무의
그 권은 사안에 따라 각기 다를 수 있는 생각.
유용적인 개념으로서, 유사판판자를 가하여 그 식별
적의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 / 식별적 독자부정성사비
식별적이 포함된 하위권 이후 각기 다른 식별적
식별적은 각기 다른 식별적은 해당 식별적에 대해
식별적은 취득한 것으로 보고 유사판판 사안을 가하여
이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4. 장르

취득된 식별적에 따른 특성의 변화의 필요성과
식별적이 식별적·유용적으로 변화는 것은 고려할 때,
세계가 다양하다.

5. 사안

판례 X가 유사판판자를 가하여 '유용'에 대해
식별적 취득하였음을 고려할 때, ① '유용'에 따라
여는 X나 Y의 식별적 인성이 유사하여 유사판판이다.

㉔ '반복양말'의 대체어는 식별력이 낮아 X와 Y의
저별적 인성이 높아하므로 바꾸어 쓰면 된다.

6. 신발의 재질

X와 Y는 '양말'의 대체어는 유사하다 / ~~반복양말~~
~~재질~~ 바꾸어 쓰라. (결)

12.4



[문제-3]

I. 식민 (1) 10

1. 예상 가결 사유 - 조 33조 상 6호

(1) 간접적인 흔이 있을 경우 조 33조 상 6호

간접적인 흔이 있을 경우만으로 된 식민을 특정국영임의
자위성용식별징이 필요치 않음 불확실하다.

(2) 원상가결 사유

자위성용을 비롯한 가결에서 흔이 볼 수 있는
행위인거나 특정 차등하기 여부를 고려해 판단한다.

(3) 식민이 예시

① 2개 이하의 영문과 'K'와 'J'를 결합한 것으로
구성이 된 경우, ② 2개 이하 숫자로 구성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4) 사안

"K2"는 영문과 'K'와 숫자 '2'를 결합한 것으로
2개 이하의 간접적인 징후만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수많은 선행 특허 등록 후 이 특허화기에 조 33조
상 6호에 해당한다.

2. 甲 출원의 등록가능성 검토

(1) A형에 의한 식별력 조 33조 상 6호

A형위를 제외한 경우로써 출원 일부의 식별력 없음

상표를 사용한 것은 특강인의 상표 출자로 인식된
경우 추가적으로 상권 질에 따라 개인에 해당하는 상표
라고 판단 가능하다.

(2) 상표 출자의 당사자 관계

본래 특허 출원, 상표권 출원 인권의 출원 계산을
하명하는 경우라도 그 같은 상표 출자 계약·적용되어야
한다 인정된다.

(3) 출원 권리의 사용 여부 (과거)

甲은 출원 권인 2014년 2월 특허 "K2"를 출원
등록이 사용처론 바, 출원 권리의 사용 여부를 인정한다.

(4) 특강인의 상표 출자로 인정되는지 여부

1) 인정되는 사례

상표의 사용처론·기간·사실관계론·관련 학회 및 연구,
주제·의정 일로·사용처론 등을 종합하여 인정된다.

2) 출원이 인정되는 상표의 사용 사례

상표에 관한 특별법 취득을 위해 사용한 상표·상표에
한하여 마쳐나, 출원이 인정되는 상표의 기간 사용
위 특강인출의 특별법 취득에 관련된 근거가 있다.

3) 사안

① 甲이 "K2"를 광기안 승인라고, 약 10년간 "K2" 및 기타
출원이 인정되는 상표가 사용된 '출원'을 본에게
기준 특강인 50%에 관한 경우 볼 때, "K2"는

'등인원'이 대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은 취득된다.
 ① 한편 '등인원'은 판매상이 동일하더라도 '등인원'의
 사원등록상 등인원 식별력 이타에서, 사용에 의한 식
 별력은 취득하기 못한다.

3. 식별력의 해석

① 사용에 의한 식별력은 실제 사용한 상품에만 인정되어
 등록이 가능하므로, ② 甲 출원은 '등인원'이 대체하는
 사용식별력은 인정에 등록 가능하다. ③ '불량등록'이 대체
 하는 부원 개질권 있다 (문.542 후단).

II. 식별력 3.0

1. 제3자의 사용식별력 과거부 위배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전에는 출원인의 사용식별력
 을 고려한 것이 원칙이다. 제3자가 상품에 관한 권리를
 양득한 가등성이 있는 경우 그 제3자의 사용식별력 고려
 하여 판단 가능하다.

2. 후진 이성의 비정당한 사용 - 심사기준

후진 이성 라인에 경쟁하의 높은 점유하여 사용해도
 영구 식별력 취득에 부정적인 요소 없다.

3. 사안

① 실용 (1)에서 관습상 바뀐 같이 甲 출원 중 '유형'에 대한 출원도 사정이 의한 선행특허가 엔지니어 등 즉 가능하여, ② 본 실용의 경우 甲이 乙의 후자의 기본 관습상 본래의 가늠의 乙의 후자는 선행특허로 인정하는 것은 김을 볼 때 乙의 사정만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③ 후의 이상 비정상적인 사정만 있을 경우에는 '응답'에 대한 사정이 의한 선행특허 취득 가능하나

4. 실용의 범위

과제에 따른 '응답'·'응답'에 모두 적용 가능하나

III. 실용 (3) 4.5

1. 사안의 유권관할 중 사정관행 법

(1) 사정 관행 및 사정관행 인정 사례

사정 관행은 관습상 인정되어 왔으나, 사정 관행 중 후자에게 같은 인정을 위하여 기록-인정에 합리성 인정하여 출원가능성 후행하는 부분, 즉 사정관행은 사정관행 관습상 관행상 인정되어 그 후행하는 유권관할 법-관습상 인정 관행.

(2) 사정 관행 인정 관련 사례



인 부인이 오뚜기 해빙하더라도 해빙 성능의 차이. 기명
징오, 두산에게 강한 인상을 상하하는 부원인기, 상하
직 식별적 수평선 정량 수리, 자임수평선리 관계,
기비수평 선 수평화하여 관상제사 한다.

2. A용의 다른 식별적 취득 비리적 등록 수리제
상하에 의한 식별적도 취득하여 등록의 기명 그 수리제
일반적인 상하의 수리제라 할이 용화 제사한 상하.
수평 선의 수리제 비리적 등록 행하 가능하다.

3. 사안

① 甲의 "K2"는 그 자체가 원래로서 관용·호칭으로 별다른
의미나 없으나, ② 乙의 "K2 BOOTS"의 장구 'Boots'
는 특 사용성인 '평상선'이라 수리제에서 식별적 수리
나 미약한데 비해 'K2'는 甲의 각종 수리제 식별적
취득한다. 'K2'가 의의 수리제 한 수리제, ③ 甲의 사용에
의한 식별적 수리제 수리제 甲의 "K2"라 수리제
중 의의인 "K2"는 수리제, ④ 수리제 수리제 수리제
영역이 있는 수리제이다.

4. 식별적 해명

따라서 양 수리제 수리제라도 그 수리제 수리제이다. [물]

[문제-4]

I. 식문 (1) 6.0

1. 현저한 개성 명칭의 취급

① 현저한 개성 명칭 조항 332 항 4호

현저한 개성 명칭이나 그 약어 또는 자릿간 돌린
상표 등 등록 불가능. 등록가능 및 자릿간돌린
부사하기 때문이다.

(2) 현저한 개성 명칭 의미 취급

현저한 개성 명칭은 소비자에게 즉각적인 개성 강화를
진작하는 명칭을 가한다.

(3) 다른 구멍이 포함된 경우 취급

현저한 개성 명칭 중에 다른 구멍이 포함된 경우도
새로운 식별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등 특정한 식별
력을 갖도록 불가능하다.

(4) 위반 시 취급

등록 단계에서 위반시 기각사유에 해당하여, 등록 후에는
무효사유가 된다.

2. 甲의 출원 등록가능성 (각각)

(1) 甲의 출원 취급

① 현저한 개성 명칭에 식별력 있는 다른 구멍이 부가된
경우도 그 전항으로 인해 새로운 식별력이 형성되어

나 새로운 발명은 다른 발명으로부터 상 4원에
해당해 안되며, ② 새로운 발명이 항시래 영구로
다양양하므로 제법적 사안의 따라 구체적으로 상여
강해야 한다.

(2) 관습 수배제 제2 번째의견

상여에 의한 수배제적 흥행사실 안 되거나, 미확고의
담 태는 상여 다른 수배제적 안의 등 가능해
한다.

(3) 공로

결함으로 새로운 수배제적 상여적 안도 흥행 수배제적
강할 때, 관습 수배제적 상여적의 상여적.

(4) 사안

① 다른 사안'은 현재상 제법 상여적 '상여적' 역시
수배제적 상여적. ② '상여적'의 흥행 기간상 사안의
후, 그 제법적 상여적 '상여적'은 상여적 상여
한 상여적'가 아닌 '상여적'에 상여적'라고
상여적. ③ 이는 상여적 상여적 상여적' 상여
한 때, 상여적 상여적 상여적 상여적.

(5) 결론

따라서 甲 상여적 등 상여적.



II. 식별의 4.2

1. 3332 항 본 내역 취지

식별의 항 본 내역의 취지는 여러 면에서 다르다. 그러나 식별의 항 본 내역 및 식별의 항 본 내역이 있는 식별의 항 본 내역은 본 항 본 내역으로 3332 항 본 내역 이므로 식별의 항 본 내역의 취지는 본 내역이다.

2. 식별의 항 본 내역

식별의 항 본 내역이 다른 식별의 항 본 내역과 다르다. 식별의 항 본 내역은 식별의 항 본 내역과 다르다. 식별의 항 본 내역은 식별의 항 본 내역과 다르다.

3. 식별의 항 본 내역

식별의 항 본 내역이 다른 식별의 항 본 내역과 다르다. 식별의 항 본 내역은 식별의 항 본 내역과 다르다. 식별의 항 본 내역은 식별의 항 본 내역과 다르다. 식별의 항 본 내역은 식별의 항 본 내역과 다르다.

4. 식별의 항 본 내역

① "engineering your competitive edge"는 식별의 항 본 내역이 아니다. 그 식별의 항 본 내역은 식별의 항 본 내역과 다르다. 식별의 항 본 내역은 식별의 항 본 내역과 다르다. 식별의 항 본 내역은 식별의 항 본 내역과 다르다.

① 인도를 사임은 되어 앓는다. ② 해상 인물은 문화권
 분리를 특강인이 출회 후자로 인하여 가등성이 인정되어
 ③ 20332 상 법이 해임되어 공판문 취지인 의
 전시는 작성한다.

〈이야기〉

